# 감사 보고서

- 동남지방통계청 -

2020. 7.

통계청

## │.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목적

○ 동남지방통계청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현장조사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동남지방통계청

○ 감사범위 : 일반행정 및 인사분야, 예산회계분야, 통계조사분야,

청렴·행동강령분야(갑질행위, 소극행정 포함) 등 업무전반

##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 6. 15. ~ 6. 25(9일간)

○ 감사대상기간 : '17. 7. 1. ~ '20. 5. 31.까지(2년 11개월)

○ 감사인원 : 감사반장(감사담당관) 등 10명

## 4. 감시중점시항

- 통계조사 정확성 및 조사대상처 관리 등 현장조사 적정성
- 유연근무 실태 등 복무관리 적정성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예산집행 적정성
- 지역통계 작성승인 등 지역통계 업무 적정성
- 갑질행위 근절 노력 및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등

##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명세

##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1)

제 목 가계동향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불응가구 관리 미흡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계 부서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은 본부 관할지역 내 각각 ◇◇가구('20.4월¹) 가계동향조사 기준), ◆◆가구('20.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를 대상으로 매월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현장조사 운영지침(통계청훈령 제541호, 2019.12.30.)』'제17조(조사불응·불능 대처) 제2항'에 따르면「조사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조사불응 인정기준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조사 시 불응대응 매뉴얼(◎과, 2019.12.)』6p '1) 가구·농어가 설득횟수 3회의 단계별 과정'에는 「조사 개시 이후 자율설득기간(가계동향조사 2개월, 경제활동인구조사 3개월)이 경과한 뒤, 추가 3회의 팀장 또는 총괄자 동행설득을 수행하고, 방문일시, 설득방법, 불응사유 등 '불응가구 설득 현황'자료를 기록·관리하여 팀장 및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설득중단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남청 가계동향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담당자는 대상가구 조사개시 이후 자율설득기간이 지난 뒤에도 가구의 응답거부가 지속되는 경우.『현장조사 운영지침』

<sup>1)</sup> 가계동향조사 '20년 5월조사 마감일은 6월19일로 감사기간과 중복되어 전월인 4월기준을 적용함

및 『통계조사 시 불응대응 매뉴얼』에 따라 팀장 또는 총괄자 동행 등 3회의 추가설득을 수행해야 하고, 방문일시, 설득방법, 불응사유 등을 '불응가구 설득현황' 자료로 작성하여 팀장 및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7.7.1.~2020.5.31.) 동남청 ◆과의 가계동향조사 및 경제활동 인구조사 불응가구 관리내역을 검토한 결과,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20년 4월 기준 으로 조사개시 이후 자율설득기간 2개월이 지난 불응가구 총 134가구 중 88가구에 대한 '불응가구 설득현황'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 <표1> 가계동향조사 '불응가구 설득현황' 작성여부

('20년 4월 기준, 단위 : 조사구, 가구)

패널	그룹	l룹 조사개시 월		불응가구수	설득	현황
- 베글	그펍	조자게시 결	조사구수	돌당기구구	기록	미기록
1	6	(1구역) '19년11월, (2구역) '19년12월	10	33	15	18
2	3	(1구역) '19년11월, (2구역) '19년12월	10	28	4	24
2	4	(1구역) '19년 1월, (2구역) '19년 1월	10	24	4	20
2	5	(1구역) '19년 1월, (2구역) '19년 1월	10	26	23	3
3	1	(1구역) '20년 1월, (2구역) '20년 2월	10	23	0	23
		합 계	50	134	46	88

<sup>※ 「2020</sup>년 가구부문 맞춤형 설득지원반 운영계획(안)(◆과-331, 2020.2.17.)」에 따른 설득지원반 운영 으로 일부 불응가구(46가구)에 한해 설득현황이 기록됨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20년 5월 기준으로 조사개시 이후 자율설득 기간인 3개월이 지난 불응가구 총 196가구 중 128가구에 대한 '불응가구 설득 현황'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 <표2> 경제활동인구조사 '불응가구 설득현황' 작성여부

('20년 5월 기준, 단위 : 조사구, 가구)

연동	그룹	조사개시 월	조사구수	불응가구수	설득현황		
회차	그팝	조자게시 결	エバナナ	돌당기구구	기록	미기록	
5	2	'17년 5월~8월(1~4구역 순차개시)	9	20	5	15	
5	3	'17년 9월~12월(1~4구역 순차개시)	12	22	5	17	
6	4	'18년 1월~4월(1~4구역 순차개시)	11	32	5	27	
6	5	'18년 5월~8월(1~4구역 순차개시)	11	29	14	15	

연동	그룹	조사개시 월	조사구수	불응가구수	설득	현황
회차	ᅩᆸ	[합 조자개시 결 조자구구		돌당기구구	기록	미기록
6	6	'18년 9월~12월(1~4구역 순차개시)	10	22	8	14
6	7	'19년 1월~4월(1~4구역 순차개시)	10	27	8	19
6	8	'19년 5월~8월(1~4구역 순차개시)	9	20	10	10
6	9	'19년 9월~12월(1~4구역 순차개시)	10	19	13	6
6	1	'20년 1월~4월(1~4구역 순차개시)	5	5	0	5
		합 계	87	196	68	128

<sup>※ 「2020</sup>년 가구부문 맞춤형 설득지원반 운영계획(안)(◆과-331, 2020.2.17.)」에 따른 설득지원반 운영으로 일부 불응가구(68가구)에 한해 설득현황이 기록됨

## 관계기관 의견

동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팀장 및 현장조사 직원이 『통계조사 시불응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여 '불응가구 설득현황'이 지침에 맞게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조사 시 불응대응 매뉴얼』에 따라 '불응가구 설득현황'을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시정 요구

(일련번호 : 2)

제 목 어업생산동향조사 내수면양식 대상처 관리 미흡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사무소

내 용

### 1. 업무 개요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에서는 어업생산동향조사 내수면양식(전수) 조사를 위하여 관할 지역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내수면 양식인·허가 및 면허 사항을 파악하여 대상처 관리를 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현장조사 운영지침(통계청훈령 제541호, 2019.12.30.)』 '제8조(현장조사 담당자 기본 자세)'에 따르면「1. 통계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업무에 전념하며 조사지침의 정확한 이해 및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20년 어업생산동향조사 지침서』 'II.현장조사 2.조사대상처(어가, 사업체) 관리요령 다. 비계통 전수조사(내수면양식 포함) 대상처 관리(25쪽)'에는 「전수조사 대상처 관리를 위해 연 2회(내수면양식은 연 1회\*)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양식면허(신규등) 현황 등을 파악, 양식 운영 상태를 파악하여 조사대상처가 누락되지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2018년까지 연 2회에서 2019년부터 연 1회로 변경

따라서, 동남청 어업생산동향조사를 총괄하는 부서(사무소)별 업무담당직원은 어업생산동향조사 내수면양식 대상처관리를 위해 연 2회('19년 부터 연 1회)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인·허가 및 면허 대장을 입수하여 조사대상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7.7.1.~2020.5.31.) 중 동남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 내수면양식 대상처관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동남청 ▲사무소는 대상처(신규 등) 파악을 위해 총 3개(▶시, ⑥시, ◀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연 2회('19년 부터 연 1회) 자료 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17년과 '18년에 각 1회만 자료를 요청하여 입수하였으며, 특히 '18년에는 2개(⑥시, ◀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입수를 미실시 하는 등 대상처 관리가 미흡하였다. <표1> 참조

<표1> 동남청 ▲사무소 내수면양식 대상처관리 현황

연도	자료요청 (일자)	시·군·구	문서 시행	자료 입수	결과 보고	입수 자료 정비 결과
	1회차 (1.9.)	▶시	0	0	×	없음
		● \( \) \( \)	0	0	×	없음
0017	(1.9.)	<b>◀</b> 시	0	0	×	없음
2017	그리 뒤	▶시	×	_	_	자료요청 미실시
	2회차 (미실시)	● 시	×	_	_	자료요청 미실시
		<b>◀</b> 시	×	_	_	자료요청 미실시
	1회차	▶시	0	0	×	없음
		● \  \  \	0	×	×	입수자료 없음
2010	(1.3.)	<b>◀</b> 시	0	×	×	입수자료 없음
2018	2회 차	▶시	×	_	_	자료요청 미실시
		● \  \  \	×	_	_	자료요청 미실시
	(미실시)	<b>◀</b> 시	×	_	_	자료요청 미실시
	1, 2회차	▶시	0	0	0	총 6건(운영 4, 신규 0, 폐업 등 2)
2019	(1.8., 7.4.)	<ul><li>▶</li></ul>	0	0	0	총 26건(운영 17, 신규 5, 폐업 등 4)
		┫시	0	0	0	총 7건(운영 4, 신규 0, 폐업 등 3)

또한, '19년 대상처현황 파악을 통해 확인된 ♡도 ◉시의 신규 대상처인 '033번 V('19년 8월 신규 등록)'에 대해서 '20년 3월분 까지는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도 ♣군 '035번 U' 대상처의 대표자와 동일하다는 사유로 '20년 4월분 부터조사를 중지(대상외) 하였고, ♡도 ◉시 '033번 V' 대상처의 생산량을 동남청의

요청으로 ◈청 ◇과에서 □도 ♣군 '035 U' 대상처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어업통계시스템에 입력을 하였다.

이에 따라, ♡도에서 조사·입력되어야 할 '20년 4월분 내수면양식 ▽어종 20,000kg 80,000,000원이 ◎도에 입력되었다. 따라서 그 만큼 ◎도는 과다, ♡도는 과소 집계되어, '20년 5월 31일에 공표(잠정, KOSIS 시스템) 되었다. <표2> 참조

### <표2> 국가통계포탈(KOSIS) 내수면양식 ▽어종 공표(잠정) 자료 오류내역

(단위: Kg, 원)

시·도	구분	'20년 4월분 KOSIS 공표	오류 입력값	'20년 4월분 실제 집계값	차이(%)
♡도	생산량	7,000	(-) 20,000	27,000	285.7
▽ェ	생산금액	30,489,000	(-) 80,000,000	110,489,000	262.4
	생산량	21,000	(+) 20,000	1,000	-95.2
<b>©</b> 도	생산금액	85,200,000	(+) 80,000,000	5,200,000	-93.9

그 결과, 「2020년 어업생산동향조사 지침서」'Ⅱ. 현장조사 2. 조사대상처 관리요령'에 따른 조사대상처 관리지침 미준수와 ♡도 및 ◎도의 내수면양식 ▽어종의 '20년 4월분 잠정결과 오류를 초래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동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대상처 이관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착오 조사된 '20년 4월분 잠정자료는 수정·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주의] 동 건과 관련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지침에 맞게 대상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동 건과 관련하여 '20년 4월 내수면양식 ▽어종의 잠정자료를 수정·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3)

제 목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 지정 부적정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계 부서 ◎과.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은 통계조사 응답률 제고 및 현장조사 정확성 확보를 위한 유인책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20종 통계조사 응답자에게 ☑상품권 등 통계 조사답례품을 지급·관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규정(통계청훈령 제540호, 2019.12.26.)』'제16조(관리방법)'에 따르면,「지방통계청장은 지방통계청 본부는 경력 3년 이상, 사무소는 경력 2년 이상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남청 본부과의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때에는 『통계조사 답례품 지급·관리규정』에 따라 경력이 3년 이상인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7.7.1.~2020.5.31.) 중 동남청의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경력이 약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과 ◆급(현, ◇급) A 등 2명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등 통계조사답례품 관련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참조

### <표>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 경력미달자 지정 내역('17. 7.~'20. 5.)

부 서	직급 (현)	담당자	담당기간	임용일	경력	미달 경력
© 과	<b>♦</b> 급	AP	2020.2.1.~현재	2019.3.12.	11개월	2년 1개월
<b>◆</b> 과	◆급(◇급)	А	2018.12.1.~현재	2018.7.1.	5개월	2년 7개월

그 결과,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규정(통계청훈령)』'제16조(관리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동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규정 (통계청훈령)』에 맞게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조사답례품 지급· 관리규정(통계청훈령)』에 따라 경력이 충족되지 않은 공무원이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 보

(일련번호: 4)

제 목 신규 공무원 및 공무직 현장조사 교육 미흡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계 부서 ◎과. ◆과. ◇과.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내 용

### 1. 업무 개요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은 『현장조사 운영지침(통계청훈령)』에 따라 사업체 및 가구 등을 대상으로 통계생산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현장조사 운영지침(통계청훈령 제555호, 2020.4.28.)』'제12조(교육)제2항제1호'에 따르면,「지방통계(지)청장은 조사행정팀장, 조사팀장, 조사별 총괄자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담당자가 통계조사를 신규 담당하게 되는 경우 현장조사 수행 전 통계조사기법(소양교육 포함) 및 해당 조사지침서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남청에서는 『현장조사 운영지침(통계청훈령)』 '제12조(교육)제2항제1호'에 따라 신규 임용자가 현장조사를 담당하게 될 때에는 현장조사 수행 전 통계조사기법 및 해당 조사지침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7.7.1.~2020.5.31.) 중 동남청의 신규 공무원 및 공무직이 현장조사를 담당한 경우의 현장조사 관련 교육실시 내역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담당신규자 교육이 필요한 총 49건 중 2건(◎과 1건, ◁사무소 1건)의 교육을 미실시하였고, 교육을 실시한 47건 중에서도 계획 미보고 2건, 결과 미보고 14건, 서명부미작성 20건으로 확인 되었다. <표> 참조

#### <표> 동남청 현장조사 담당 신규자 교육실시 현황('17.7.~'20.5.)

(단위 : 건)

	신규	교육		교육	실시	
부 서	임용·채용	교육 미실시		계획	결과	서명부
	0010	미르시		미보고	미보고	미작성
동남청	49	2	47	2	14	20
◎과	5	1	4	0	4	4
<b>◆</b> 과	7	0	7	1	5	2
◇과	3	0	3	0	1	3
⊗사무소	10	0	10	0	0	5
◁사무소	5	1	4	1	0	2
▷사무소	7	0	7	0	4	4
□사무소	5	0	5	0	0	0
▲사무소	7	0	7	0	0	0

그 결과, 『현장조사 운영지침(통계청훈령)』'제12조(교육)'규정을 위반하였고 관련 교육 실시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계기관 의견

동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사 운영지침(통계청훈령)』에 따라 현장조사를 담당하게 되는 신규 공무원 및 공무직에 대해서 현장조사 교육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앞으로 현장조사를 담당하게 되는 신규 공무원 및 공무직에 대해서 현장조사 교육이 누락 되거나, 미흡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 보

(일련번호 : 5)

제 목 신규 지역통계 작성승인 심사 부적정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계 부서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은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통계청 예규 제193호 2016.9.30.)』 제정으로 통계의 작성승인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통계법(법률)』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통계 승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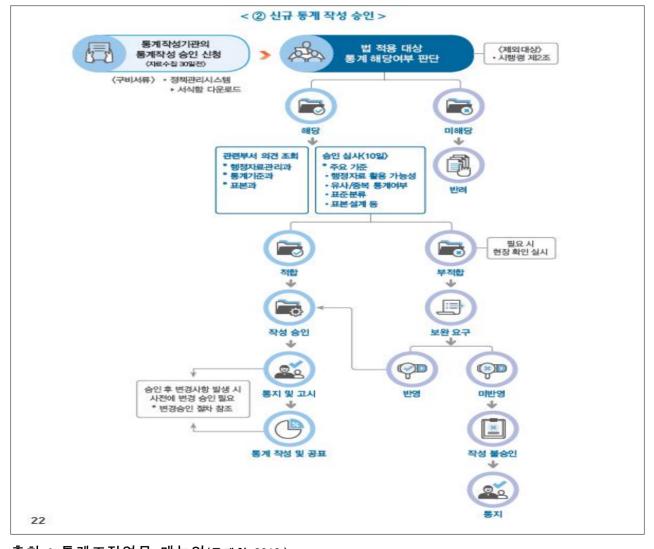
『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21호, 2018.6.30.)』'제33조(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제3항'에 따르면,「1. 통계작성의 목적 2. 통계작성방법 및 항목의적절성 3. 소요예산 4. 통계작성 가능성 및 작성된 통계의 활용도를 검토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고,『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통계청예규 제238호, 2020.4.29.)』'제9조(작성승인의 심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기존 승인통계와 유사중복사항이 있는지 여부, 가공통계는 가공기법 등, 신규통계의 작성인 경우 관련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제1항 제2호에따른 유사중복 여부는 작성목적, 포괄범위, 분류기준, 작성주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되, 항목의 경우는 [별표 1]의 '유사중복통계 판정기준'을 참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1〉 참조

<표1> 유사중복통계 판정기준(제9조제3항 관련)

다른 승인통계와 작성항목 중복율	처리지침
50% 이상	불승인 또는 조사항목 재설계
30% 이상 ~ 50% 미만	핵심항목을 제외한 유사한 조사항목 재설계
10% 이상 ~ 30% 미만	조사항목 삭제 또는 변경

따라서 동남청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통계작성 요청으로 승인 심사를할 경우, 새로운 국가통계가 생겨나는 것이므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통계청예규 제238호, 2020.4.29.)』'제9조(작성승인의 심사)'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익성·연속성·절차성 및 활용성을 중심으로 '통계작성 승인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등을 거쳐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림> 참조

<그림> 신규 통계작성 승인 업무 흐름도



출처 : 통계조정업무 매뉴얼(통계청 2019.)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7.7.1.~2020.5.31.) 중 동남청의 신규 지역통계 작성승인 심사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통계조정 업무의 지방청 위임 이후('16.9.30.) 중지승인 된 3건 중 본청에서 작성승인한 '★시 제조업동향조사'등 2건의 경우, 중지승인 되기까지 13년간 작성유지된 반면 ♥광역시 ⊙군의 '⊙군생활밀접업종행정통계'는 동남청에서 2017.11.22. 작성주기 2년으로 작성승인을 하고도 2018.10.15. 중지 승인을 함으로써 작성유지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였다.

이는 통계조정 업무의 지방청 위임 이후 동남청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통계 작성대행 및 신규 지역통계 작성승인 업무를 ●과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지역통계 승인 시에 보다 높은 객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철저히 검토하여 작성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고군생활밀접 업종행정통계'의 통계작성목적, 사업예산확보(7백만원), 작성주기(2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작성승인을 함으로써 2018.10.1. ⊡군은 '활용도 저조' 및 '예산미확보'를 이유로 작성중지 요청을 하였고, 이로써 작성승인 10개월만에 작성중지승인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참조

### <표2> 통계조정 업무 지방청 위임 이후 중지승인 통계 내역

연 번	승인 번호	통계명	지원 내용	승인 일자	중지 일자	작성 주기	작성 유지	신규 승인	중지 승인
1	791002	★시제조업동향조사	기술지원	'06.3.31.	'19.4.4.	분기	13년	본청	동남청
2	791003	★시서비스업동향조사	기술지원	'06.3.31.	'19.4.4.	분기	13년	본청	동남청
3	605004	⊡군생활밀접업종행정통계	전체대행	'17.11.22.	'18.10.15.	2년	10월	동남청	동남청

## 관계기관 의견

동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보다 높은 객관성을 가지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통계 작성승인 관련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앞으로 『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통계청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통계 작성승인 업무처리 시보다 객관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6)

제 목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채용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에서는 경제통계통합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등 연간 및 특별조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입력·내검원)는 '근로계약' 으로, 도급조사원은 '도급계약'의 형태로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현장조사 운영지침(통계청훈령 제514호, 2019. 6. 18.)』'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통계(지)청장은 나라통계시스템 또는 근로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시조사원 모집, 관리 및 사후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통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간한『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업무편람(2020. 4.)』'Ⅷ. 근로 계약', 'Ⅸ. 근로자 인사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르면,「근로계약서 작성 후 7일 이내 사용자 등록, 채용이력관리 등을 근로자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사후평가 후에는 사후평가 결과를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 업무편람(운영지원과, 2018. 12.)』'Ⅱ. 사후평가'의 '4. 채용제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경우는 사후평가를 미실시하되, 향후 2년간(포기한 날로부터 2년) 채용을 제한한다. 단, 정당한 중도포기사유(질병, 가족 간호, 타지역 이사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채용이 가능하고, 합격자발표 후 채용(교육포함) 이전에 포기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업무편람 'WII. 근로자 인사시스템 운영'의 '4. 사후평가'에는「채용제한 사유 발생 시 채용(경력)관리-채용결과(제한)-채용제한관리 메뉴를 통하여 채용제한 대상자를 등록하여 관리」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동남청에서는 연간 및 특별조사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정보를 '근로자 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이중취업 방지, 중도포기자 채용제한,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간·특별조사 담당자는 도급조사원을 채용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중도포기자 발생 시 '근로자 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향후 2년간 통계청 조사원으로 채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7.7.1.~2020.5.31.) 중 연간 및 특별조사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채용정보의 '근로자 인사관리시스템'등록 실태를 검토한 결과, '2017년 생활시간조사시험조사'등 10건의 조사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29명의 채용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참조

<표1> 기간제근로자 채용정보 시스템 미등록 내역

연번	조사명	부 서		채용내의	4		담당자
צונו	ひいる	T 71	채용구분	채용기간	사후평가일자	인원	(현부서·직급)
1	2017년 생활시간조사 시험조사	<b>◆</b> 과	조사관리자	2017.11.10.~ 2017.12.4.	2017.12.5.	1명	◎급 G (◎과)
2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과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2017.11.13.~ 2017.12.8.	2017.12.11.	2명	◎급 C (⊗사무소, ●급)
3	2017년 <b>◀</b> 시 복지실태조사	●과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원	2017.8.29.~ 2017.9.27.	2017.9.28.	6명	◇급 J (▲사무소, ◎급)
4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b>●</b> 과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입력내검원	2018.8.22.~ 2018.9.21.	2018.9.27.	5명	●급 Y (▲사무소)
5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	●과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입력내검원	2018.9.6.~ 2018.9.21.	2018.9.28.	3명	●급 AN
6	◈ 크루즈 방문객실태조사	●과	업무보조원	2018.2.1.~ 2018.12.21.	2018.12.26.	1명	◎급 Q (○과)
7	2018년 ■군 노인실태조사	●과	업무보조원	2018.6.27.~ 2018.12.17.	2018.12.18.	1명	©급 AO
8	2018년 ♥시 사회조사	●과	업무보조원	2018.6.18.~ 2018.9.13.	2018.9.18.	1명	©급 AO

연번	고 U G	н л	채용내역				담당자
선인	조사명	부 서	채용구분	채용기간	사후평가일자	인원	(현부서·직급)
9	2019년 사회조사	<b>♦</b> 과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2019.5.7.~ 2019.5.31.	2019.6.3.	5명	© I I
10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과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입력내검원	2019.8.14.~ 2019.9.6.	2019.9.9.	4명	●급 Y (▲사무소)
	합계						

또한, 동남청에 채용된 도급조사원 중도포기자의 시스템 등록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도급조사원 AB 등 9명을 채용제한관리 대상자로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용제한관리 대상자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중도포기자 중 H는 중도포기 이후 2년간 채용제한이 되었어야 하나,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19년 경제통합조사'에 도급조사원으로 채용되는 등 채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참조

### <표2> 근로자 인사시스템 중도포기자 미등록 내역

연번	연도	조사명	부 서	담당자 (현부서·직급)	중도포기자	비고(중도포기 사유)
1	2017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b>◆</b> 과	◎급 AA (◇과)	AB	개인사정
2	2017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b>◆</b> 과	◎급 AA (◇과)	AC	개인사정
3	2017	◈ 일자리 종합실태조사	●과	◇급(◎급) D	AR	사유 없음
4	2017	◀시 복지실태조사	●과	◇급 J (▲사무소, ◎급)	Т	사유 없음
5	2017	◀시 복지실태조사	●과	◇급 J (▲사무소, ◎급)	Z	사유 없음
6	2018	경제통계통합조사	<b>◎</b> 과	◇급 AQ (⊠실)	Н	개인사정, 이후 '19년 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19년 경제통계통합조사 에 채용됨
7	2018	경제통계통합조사	◎과	◇급 AQ (⊠실)	AG	개인사정

연번	연도	조사명	부 서	담당자 (현부서·직급)	중도포기자	비고(중도포기 사유)
8	2018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과	●급 Y (▲사무소)	0	개인사정
9	2019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b>◆</b> 과	◆급(◇급) A	Al	개인사정

## 관계기관 의견

동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현장조사 운영지침』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 업무편람』에 따라 채용정보를 '근로자 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현장조사 운영지침』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 업무편람』에 따라 근로자 채용정보 및 중도포기 채용제한 대상자를 '근로자 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 정 요 구

(일련번호: 7)

제 목 상시출장 여비지급 부적정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사무소

내 용

## 1. 업무 개요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에서는 『통계청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통계청훈령)』에 따라 매월 경상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상시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통계청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통계청훈령 제522호, 2019.6.28.)』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1항'에 따르면,「상시출장공무원 일액여비 지급기준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2'에는 상시출장 일액여비를 편도거리에 따라 4구간2으로 구분하도록 되어있다. 동남청 ○과에서는 상시출장 일액여비 정액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이를 ◎과에 제출하고 관할 부서에 비치하고 있다.

따라서, 동남청은 상시출장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상시출장 일액여비 정액표'에 따른 여비를 출장 급지에 맞게 지급하여야 한다.

<sup>2) 1</sup>구간(20km 미만) 12,000원, 2구간(20km~40km 미만) 16,000원, 3구간(40km~60km 미만) 25,000원, 4구간 (60km 이상) 30,000원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표> 개인별 상시출장 급지 착오 지급 내역('17. 7.~'20. 5.)

(단위 : 원)

부 서 (현 부서)	출장자 (현 직급)	출장건수	수령여비	적정여비	과지급액
◁사무소	●급 AS	'작물재배면적조사'1건	16,000	12,000	4,000
◇사무소 (▲사무소)	●급 AL	'가계동향조사 가구설득지원'1건	16,000	12,000	4,000
< 사무소 (◆과)	◎급(●급) P	'가계지출조사 및 가계간이조사'1건	16,000	12,000	4,000
< 사무소 (●과)	©i E	'비계통표본조사 신표본설득 및 기입지도'등 2건	32,000	24,000	8,000
<! <! <! <! <! <! <! <</td <td>© IIJ</td> <td>'축산물생산비조사 및 논벼경작자파악'1건</td> <td>25,000</td> <td>16,000</td> <td>9,000</td>	© IIJ	'축산물생산비조사 및 논벼경작자파악'1건	25,000	16,000	9,000
◇사무소 (▷사무소)	©급 AK	'광업제조업 및 서비스업, 건설경기동향조사'등 5건	80,000	60,000	20,000
◁사무소	▽직 K	'비계통 표본조사 신표본확인 및 선정'등 2건	32,000	24,000	8,000
◁사무소	▽직 M	'광제조업동향조사 사업체관리'등 6건	96,000	72,000	24,000
◁사무소	▽직 U	'2017년 기준 양곡유통량조사'1건	16,000	12,000	4,000
◁사무소	▽직 AH	'서비스업조사 사업체방문'1건	16,000	12,000	4,000
◁사무소	▽직 AM	'가계지출조사'1건	16,000	12,000	4,000
합 계	11명	22건	361,000	268,000	93,000

## 관계기관 의견

동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상시출장여비 지급시 급지 착오 등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 ① 앞으로 상시출장 여비 지급시 급지 착오로 인한 과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및 안내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동 건과 관련하여 상시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한 11명[◁사무소 ●급 AS 4,000원, ●급 AL(현 ▲사무소) 4,000원, ◎급 P(현 ◆과, ●급) 4,000원, ◎급 E(현 ●과) 8,000원, ◎급 L(현 ○과) 9,000원, ◎급 AK(현 ▷사무소) 20,000원, ▽직 K 8,000원, ▽직 M 24,000원, ▽직 S 4,000원, ▽직 AH 4,000원, ▽직 AM 4,000원]에게 상시출장여비총 93,000원을 반납 받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시 정 요 구

(일련번호: 8)

제 목 공용차량 이용에 따른 근무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근무지외 출장자에 대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제3항'에 따르면,「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남청은 소속 직원의 근무지외 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무지외 출장의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7.7.1.~2020.5.31.) 동남청의 공용차량을 이용한 근무지외출장자에 대한 여비 지급내역을 검토한 결과, '9월 월간업무 추진점검회의 준비및 참석(2017. 9. 6.)' 출장업무를 수행한 ○과 ●급 X(현 ♣청, ○급) 등 3명은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일비의 감액 없이 일비 30,000원(3건)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참조

#### <표> 공용차량을 이용한 근무지외 출장자 여비 지급 내역

근무지외 출장 내역								
연번	부 서 (현 부서)	출장자 (현 직급)	출장일	출장목적	공용차량 이용여부	일비 지급액	일비 과 지급액	
1	○과 ( <b>♣</b> 청)	●급(○급) X	2017.9.6.	9월 월간업무 추진점검회의 준비 및 참석	이용	20,000원	10,000원	
2	●과	□급 AF	2020.1.14.	田군 MOU 체결	이용	20,000원	10,000원	
3	◎과 (⊠청)	□급 AT	2018.12.7.	(주)◐ 업무협력약정 체결 방문	이용	20,000원	10,000원	
			합 합 계	I		60,000원	30,000원	

## 관계기관 의견

동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한 근무지외 출장여비 지급시 일비 착오 등의 여비 과지급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 ① 앞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한 근무지외 출장여비 지급 시 일비 착오 지급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및 안내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동 건과 관련하여 근무지외 출장여비를 과 지급한 3명[○과 ●급 X(현 ♣청, ○급) 10,000원, ●과 □급 AF 10,000원, ◎과 □급 AT(현 ☑청) 10,000원]에게 근무지외 출장여비 총 30,000원을 반납 받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시 정 요 구

(일련번호: 9)

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내 용

### 1. 업무 개요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에서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매월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소속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9호, 2018.2.1.)』'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 다. 시간외근무시간산정 1) 일반대상자 가) 지급대상'에 따르면,「현업공무원 등(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 이하'현업대상자'라함)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고, '나) 시간외근무시간산정방법 (3)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에 따르면「근무당일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54호, 2018.7.2.)』 '제9장 휴가 라.특별휴가 (6)육아시간'에 따르면,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남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일 근무시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반일 연가(오후)', '조퇴'를 사용하거나, '육아시간'을 사용한 근무일자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7.7.1.~2020.5.31.) 동남청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검토한결과, '반일연가(오후)', '조퇴'를 사용하거나, '육아시간'을 사용한 근무일자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 ◎과 ◎급 AD 등 4명에게 조퇴, 반일연가(오후)를 사용한 일자의 초과근무 4건을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 113,850원(11시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 <표1> 조퇴 및 반일연가(오후) 사용일자 초과근무 내역

(단위: 시간)

일 자	부 서 (현 부서)	직급·성명	인정 출·퇴근시간	초과근무 인정시간	월 초과 근무시간	과 인정 (과 금액)	근무상황
2017.9.28.	⊗사무소 (◎과)	◎급 AD	09:00~21:38	2:38	26시간	3시간 (30,010원)	조퇴 (17:00~18:00)
2017.11.9.	□사무소 (●과)	◎급 AO	09:00~22:00	3:00	26시간	3시간 (30,010원)	반일연가(오후) (14:00~18:00)
2017.12.11.	⊗사무소 (▷사무소)	●급 B	08:30~22:02	3:02	23시간	3시간 (33,230원)	조퇴 (17:15~18:00)
2018.7.17.	□사무소 (◁사무소)	©급 F	08:30~21:08	2:08	10시간	2시간 (20,600원)	조퇴 (17:00~18:00)
	11시간 (113,850원)						

<sup>※ ◎</sup>급 AD은 '17.9월 26:30분의 초과근무 인정시간을 받아, 2:38분을 제하면 23:52분으로 23시간의 초과근무시간만 인정됨

또한, ◁사무소 ◎급 W에게 육아시간 사용일자('18.7.23.)에 초과근무 1건을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 20,600원(2시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 <표2> 육아시간 사용일자 초과근무 내역

(단위 : 시간)

OI TL	부 서	직급·성명	인정	초과근무	월 초과		근무상황	
일 자 	<u> </u>	10 10 17	출·퇴근시간 인정시간		근무시간 과 인정			
2018.7.23.	◁사무소	◎급 W	09:00~21:03	2:03	2시간	2시간 (20,600원)	육아시간 (09:00~11:00)	

## 관계기관 의견

동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조퇴, 반일 연가(오후) 및 육아시간 사용일자 수당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 ① 앞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조퇴, 반일연가(오후) 및 육아시간 사용일 지급 등의 과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동 건과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을 과 지급한 5명[⊗사무소 ●급 B(현 ▷사무소) 33,230원, ◎급 AD(현 ◎과) 30,010원, □사무소 ◎급 AO(현 ●과) 30,010원, ◎급 F(현 ◁사무소) 20,600원, ◁사무소 ◎급 W 20,600원]에게 초과근무수당 총 134,450원을 반납받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10)

제 목 기타운영비 등 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계 부서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은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해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지침)』등 관련 법규에 따라 예산을 집행·관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국가재정법(법률 제17339호, 2020.6.9.)』'제4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지침, 2017.1.)』'III. 비목별 지침'과 'V.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에는 세출예산 과목별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표1〉참조

### <표1> 예산 과목별 적용 범위

구 분	적 용 범 위
기타운영비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 등
(210-16)	법령에 지급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면접수당 및 출제수당 지급
사업추진비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240-01)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등
관서업무추진비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
(240-02)	및 체육대회, 종무식 등 기관의 공식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따라서 동남청에서는 기타운영비 등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재정법(법률)』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 따라 세출예산 과목별목적에 맞게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7.7.1.~2020.5.31.) 중 동남청의 세출예산 집행과목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 외부심사 위원 사례비 지급'등의 서류 및 면접수당을 기타운영비(210-16)가 아닌 일반수용비(210-01)로 총 8건(1,200천원)을 집행하였다. <표2>참조

#### <표2> 기타운영비 관련 착오 집행 현황('17.7.~'20.5.)

(단위 : 원)

H	집 행 사 항							
부 서	지급일자	지급건명	금액	예산과목	(적정과목)			
	2018.3.26.	'᠁임기제 공무원 채용 외부 서류심사위 원 사례비 지급'						
│ ○과	2018.5.16.	'틸임기제 공무원(◆급) 경력경쟁 채용 외부 서류전형 심사위원 사례비 지급'등 2건	300,000	일반수용비 (210-01)	기타운영비 (210-16)			
	2018.6.5.	'≣임기제 공무원(◆급) 경력경쟁 채용 외부 면접 심사위원 사례비 지급'등 3건	600,000	일반수용비 (210-01)	기타운영비 (210-16)			
	2018.6.14.	'틸임기제 공무원(◆급) 경력경쟁 채용 외부 채용점검 위원 사례비 지급'등 2건	200,000	일반수용비 (210-01)	기타운영비 (210-16)			
Ä		8건	1,200,000					

또한, '사무소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수박 구입비'등을 관서업무추진비(240-02)가 아닌 사업추진비(240-01)로 총 8건(351천원)을 집행하였다. <표3> 참조

#### <표3> 관서업무추진비 관련 착오 집행 현황('17.7.~'20.5.)

(단위 : 원)

부 서		비고			
	지급일자	지급건명	금액	예산과목	(적정과목)
▷사무소	2017.8.29.	사무소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수박 구입비	40,000	사업추진비 (240-01)	관서업무비 (240-02)
	2017.8.29.	窓분소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수박 구입비	20,000	사업추진비 (240-01)	관서업무비 (240-02)
▲사무소	2017.8.29.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과일 구입비	23,800	사업추진비 (240-01)	관서업무비 (240-02)

부 서	집 행 사 항						
	지급일자	지급건명	금액	예산과목	(적정과목)		
O과	2018.7.10.	퇴직자의 노고치하와 격려를 위한 오찬 간담회비	70,000	사업추진비 (240-01)	관서업무비 (240-02)		
	2018.13.10.	2018년 연말 직원 격려 과일 구입비	100,000	사업추진비 (240-01)	관서업무비 (240-02)		
⊗사무소	2018.13.10.	2018년 연말 직원 격려행사 필요물품 구입	35,000	사업추진비 (240-01)	관서업무비 (240-02)		
◁사무소	2018.13.10.	2018년 연말 직원 격려 물품 구입	39,000	사업추진비 (240-01)	관서업무비 (240-02)		
□사무소	2018.13.10.	2018년 연말 직원 격려 식품비 지급	24,000	사업추진비 (240-01)	관서업무비 (240-02)		
		8건	351,800				

그 결과, 『국가재정법(법률)』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동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자체검토 및 지도를 강화하여 관련 규정 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지침)』의 예산과목별 목적 및 적용범위에 맞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통 보 (적극행정 모범사례)

(일련번호: 11)

제 목 자체 모바일 집세조사 시범 실시로 현장조사 효율화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계 부서 ◆과

내 용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 ◆과에서는 소비자물가 집세지수 작성을 위하여 전세와 월세 금액에 대해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집세조사 등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조사는 응답자의 사생활 노출 기피,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자의 면접조사를 위한 방문을 꺼리는 실정이며, '20년 2월부터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그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현장 조사의 어려움이 한층 커지게 되었다.

이에 동남청 ◆과에서는 사회통계 현장조사 응답자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 19에 따른 조사방식 다양화를 검토한 결과, 집세조사가 조사문항(집세종류, 금액, 계약기간 등)이 6개로 다른 사회통계조사에 비해 적고, 매월 5일 기준으로 5일간 조사와 입력이 동시에 이루어져 업무처리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비대면조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대면 조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세조사에 모바일 조사방식을 선제적(지방청 최초)으로** 도입하여 응답가구와 직원 모두가 안전한 통계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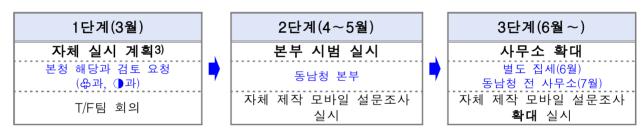
#### 가. 모바일 집세조사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 및 월별 중점사항 추진

모바일 집세조사를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사행정팀장, 과제 담당자, 집세총괄 팀장 및 집세총괄자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월별 중점사항 등을** 추진하였다. <그림1>, <표1> 참조

#### <그림1> 모바일 집세조사 운영을 위한 T/F팀 회의



#### <표1> 월별 중점사항 추진



### 나. 본청 관련과와 업무 협의

'20년 3월 본청(♣과, ◑과)과 시범조사의 타당성 및 대상 기준에 대한 1차 협의4)를 하였고, 4월~6월까지 3개월간 시범조사 후 6월 16일 SASI (Smartphone-Assisted Self Interviewing,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집세조사 추진을 위한 2차 방문업무 혐의5)를 하였다.

#### <본청 관련과와 주요 혐의 내용>

- (목적) SASI 집세조사 정확성과 효율성 확보
- (협의) 2020년 SASI 집세조사 개발 및 추진 일정 논의
  - SASI조사 설문 문항 구성, 설문 대상 기준 등
- ※ 지방청 확대 추진은 동남청 시범조사 결과('20.11.) 보고 후 최종 결정

<sup>3) ◆</sup>과-525(2020.3.11.) 「2020년 ◆과 전략과제 세부 계획 수정(안)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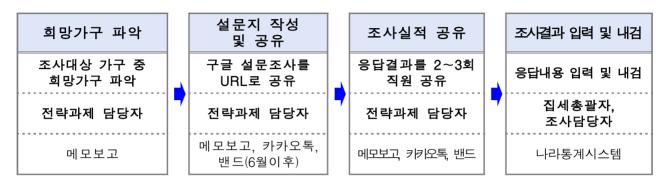
<sup>4)</sup> 융과 메모보고(2020.3.23.) 「모바일 집세조사 활용방안 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 메모보고(2020.3.25.) 「(동남청 ◆과)모바일 집세조사 활용방안 계획(수정안)」

<sup>5) ◆</sup>과-1343(2020.6.10.) 「2020년 SASI 집세조사를 위한 본청과 업무협의(안)」

#### 다. 모바일 집세조사 시범운영

자체 제작(구글 기반) 모바일 시범조사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희망가구 파악→설문지 작성 및 공유→조사실적 공유→조사결과 입력 및 내검」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 <표2> 자체제작 모바일 집세조사 시범운영 과정



'20년 3월 ◆과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집세조사 방법에 대한 교육이을 실시하고, 5월에는 별도 집세 사무소 직원 9명에 대해 영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동남청 전체 확대를 위해 전 사무소 가구부문 담당팀장 및 업무담당자등이 참석한 토론회이를 개최하여 모바일 집세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3> 참조

#### <표3> 모바일 집세조사 시범조사 교육실시 내역

구 분	시범 대상	교육 일시 및 인원	교육 사진
최초 실시(4월)	본부 ◆과	2020.3.30.(60명)	
부분 확대(6월)	별도 집세 사무소 <sup>9)</sup> (▷, ▲사무소)	2020.5.18.(9명)	
전면 확대(7월)	동남청 전체	2020.6.26.(20명)	

또한 모바일 집세조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와의 소통채널 (카카오톡, 밴드)을 구축하여 모바일 설문조사 URL을 공유하고 응답 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림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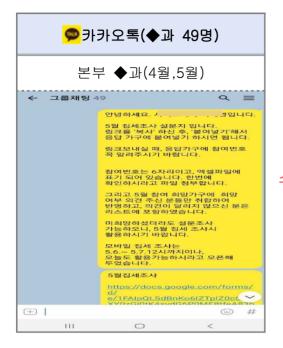
<sup>6)</sup> 메모보고(2020.3.26.) 「◆과 모바일 집세조사 가능가구 파악」 메모보고(2020.4.3.) 「(중요)◆과 모바일 집세조사 실시안내」

<sup>7)</sup> 메모보고(2020.5.15.) 「2020년 모바일 집세조사 영상회의 실시 알림(별도집세 대상사무소)」

<sup>8)</sup> 메모보고(2020.6.10.) 「2020년 가구부문 현안과제 개선 토론회 개최」

<sup>9)</sup> 메모보고(2020.5.25.) 「2020년 6월 모바일 집세조사 희망가구 파악 및 실시 안내(별도집세대상\_▷, ▲)」

#### <그림2> 모바일 집세조사 소통 채널 구축(카카오톡,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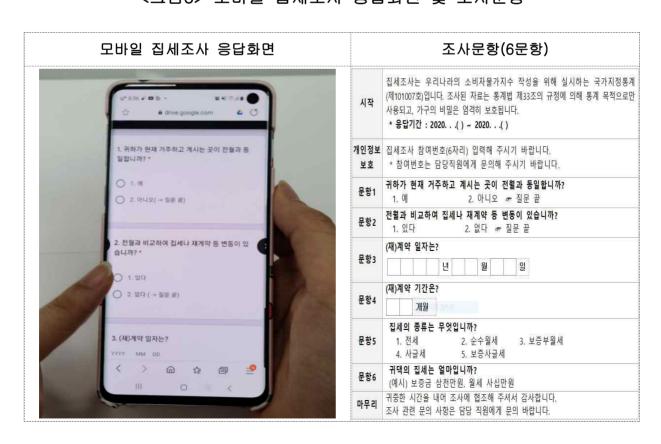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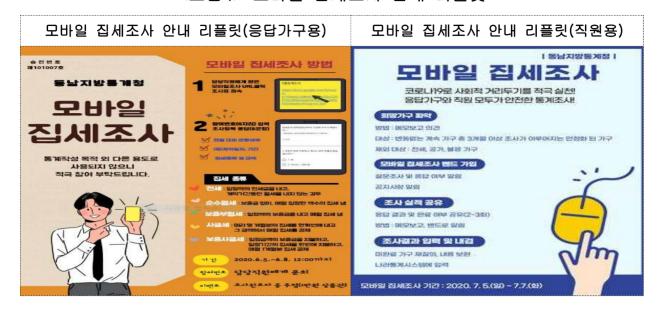


모바일 집세조사 참여 응답가구를 위해 **모바일 집세조사 리플릿을 제공**하여 모바일 조사방법, 실시기간, 집세종류, 참여번호 등을 안내하고, 이벤트를 통해 모바일 집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림3>, <그림4> 참조

#### <그림3> 모바일 집세조사 응답화면 및 조사문항



#### <그림4> 모바일 집세조사 안내 리플릿



#### 라. 모바일 집세조사 시범실시 중간 결과

동남청 집세조사 시범실시 중간 결과<sup>10)</sup> '20년 4월~6월 조사기간의 **모바일 조사율은** 9.0%(127가구)이며, 모바일 **조사 희망률은** 10.7%(151가구), 모바일 **조사** 완료율은 84.1%(127가구/151가구)로 나타났다. <표4> 참조

#### <표4> 모바일 집세조사 시범실시 결과('20.4.~'20.6.)

(단위: 가구수, %)

조사 월	부 서	전 <i>차</i> 대상가		변동 계속가	없는 구(B)	모바일희망기	! 조사 ŀ구(C)	완료기	ŀ구(D)	비구역	フト <b>(E)</b>
			D/A		D/B*		C/B**		D/C***		E/D
4월	<b>◆</b> 과	708(200)	7.1	434(118)	11.5	61(8)	14.1	50(5)	82.0	5	10.0
5월	<b>◆</b> 과	696(191)	4.6	451(108)	7.1	35(4)	7.8	32(4)	91.4	4	12.5
	<b>◆</b> 과	701(188)	5.0	443(121)	7.9	43(3)	9.7	35(3)	81.4	3	8.6
6월	▷· <b>▲</b> 사무소	131(131)	7.6	83(83)	12.0	12(12)	14.5	10(10)	83.3	10	100.0
Ē	합계	2,236(710)	5.7	1,411(430)	9.0	151(27)	10.7	127(22)	84.1	22	17.3
소 계	<b>◆</b> 과	2,105(579)	5.6	1,328(347)	8.8	139(15)	10.5	117(12)	84.2	12	10.3
소계	▷,▲	131(131)	7.6	83(83)	12.0	12(12)	14.5	10(10)	83.3	10	100.0

변동 없는 계속가구(B): 전입, 거처내이동 등 가구변동이 없는 가구(단, 전세가구 제외) ( )는 비구역가구: 경활조사구 내 경활조사를 하지 않는 가구 또는 별도집세조사구 내 집세조사가구 \* D/B: 모바일 조사율, \*\* C/B: 모바일 조사 희망률, \*\*\* D/C: 모바일 조사 완료율

<sup>10)</sup> 메모보고(2020.4.8.) 「(전략)2020년 4월 모바일 집세조사 결과」

메모보고(2020.5.12.) 「(전략)2020년 5월 모바일 집세조사 결과」

메모보고(2020.6.12.) 「(전략)2020년 6월 모바일 집세조사 결과(별도집세조사\_▷, ▲사무소 포함)」

모바일 집세조사 시범실시 기간 모바일 조사 완료가구 중 집세금액 및 종류에서 응답 착오사항(2건)이 발생하였으나 재확인 등을 통해 보완하였고, 이후 동남청 전면 확대 실시 교육에서 착오유형으로 사전 교육을 통해 모바일 집세조사 정확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모바일 조사 완료가구(127가구) 중 비구역가구\*(22가구)의 모바일 조사 참여율은 17.3%로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 비구역가구: 변동 없는 계속가구 중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지 않는 순수 집세조사 가구

또한, 응답가구의 이벤트 참여를 통해 현장조사 효율성에 기여한 노고를 격려하고 국가통계생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참여한 응답가구에 포상<sup>11)</sup>을 실시하였고, 모바일 조사 참여 응답자의 전자조사 방식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다른통계조사에도 전자조사로 응답한 사례로 이어졌다.

### <응답가구 미담사례>

● (사례1: ◇조사구 ◆가구 응답자 R)

유대감이 형성되어 좋았음

- 간단한 내용의 집세조사의 모바일 시범조사를 통해 전자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 해소 → 집세조사 뿐만 아니라 문항수가 좀 더 많은 경제활동인구조사도 전자조사로 변경
- (사례2: ○조사구 ●가구 응답자 AJ) 전자조사방식으로 국가통계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집에서 인터넷 수업을 듣는 자녀들과
  - → 기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대면조사로 실시하던 것을 전자조사방식으로 변경한 사례

그 결과, 동남청 ◆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면조사를 기피하거나 바쁜 일정으로 전화조사를 꺼려하는 응답가구를 위해 모바일 조사 희망가구에 대해 맞춤형 조사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통계조사자와 응답자의 안전한 통계조사 환경을 실현함은 물론, 조사방식다양화 시도로 현장조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모바일 집세조사 시범 실시 등 현장조사 효율화에 기여한 ◆과 ●급 N, ◎급 AE에게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sup>11) ◆</sup>과-1056(2020.5.12.) 「2020년 모바일 집세조사 포상 계획(안)」

<sup>◆</sup>과-1086(2020.5.14.) 「2020년 5월 모바일 집세조사 포상 대상가구 알림」